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고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에서 정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가능합니다. (다중주택 **불가**)

※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등록 불가!

□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 것(신청인 또는 거주 세대원)
3.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를 설치할 것

□ 구비서류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개인) - 법정 서식 ※ 참고 1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3. 사업계획서 ※ 참고 7
 - 사업개요(등록신청서 기재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 수 등)
 -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등)
 -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4. 시설의 배치도(또는 사진) 및 평면도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동의서
6.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및 입주민 동의서
- ※ 입주민 동의서는 인접세대(사업자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층 전세 대 및 직상·하층 세대**)를 **반드시 포함**하여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함
 - ※ 관리규약 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
7. 신규등록 수수료 : 현금 20,000원 (등록면허세 별도)

□ 현장심사 시 점검사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

1.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 면적과 실제 면적 동일 여부 확인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상태가 청결할 것
4.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5.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확인 할 것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당해연도 기준 30년 이내, 연와조 등: 당해연도 기준 20년 이내)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7. 소방 설비 구비 관련 안내사항 참조('2019.11.19.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난방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소화기 1대 이상, **객실마다** 휴대용 비상 손전등, 단독형화재경보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보일러실 **필수**), 피난 안내도(영문) 비치.
8.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시 현장점검 진행.
 - ※ 신규 등록시 구비서류와 동일(입주민 동의서 필수), 단순 승계는 제외

[참고사항]

○ (대상 지역 및 이용 관광객 범위)

-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이용범위: 외국인 관광객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대상 주택)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다중주택 불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종 류	내 용
1. 단독 주택	가. 단독 주택	
	다.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 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등록 불가

< 불가 사유 >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상 업무시설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 결격사유

☞ 「관광진흥법」 제7조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참고 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7.>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아영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여행업만 해당)	전자우편주소(여행업만 해당)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아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등록	→	등록증 발급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참고 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4. 2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참고 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4. 25.>

등 록 증 등 재 발 급 신 청 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④ 상 호 (명 칭)				
⑤ 업 종				
⑥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⑦ 등 록 (허가) 번 호				
⑧ 등 록 (허가) 연 월 일		. . .		
⑨ 재 발 급 사 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관 광 사 업 등 록 증 ☐ 카 지 노 업 허 가 증 ☐ 관 광 편 의 시 설 업 지 정 증 ☐ 유 원 시 설 업 허 가 · 신 고 증 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지 역 별 관 광 협 회 장 귀하				
※ 구비서류 등록증 · 허가증 · 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참고 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2. 2.>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 시설업: 5일 ○ 카지노업: 7일
------	-----	-----	---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	-------	----------------

작성 방법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등록·허가·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행정처분 내용 및 절차 진행상황

가. 최근 1년(카지노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행정처분을 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관광진흥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유의사항: 최근 1년(카지노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란 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위 표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상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표를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이 있는 경우) 양도인은 최근 1년(카지노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제1호와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및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한 경우) 양수인은 최근 1년(카지노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제1호와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및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처분관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4. 양수인은 「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다는 사실과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5】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12. 10.>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 통보서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 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휴업 또는 폐업 범위			
휴업기간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참고사항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첨부서류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	-----	---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 지역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 일지

(주소지, 사업자명 기재)

연 번	날 짜 ¹⁾	성 명 ²⁾	국 적	숙박일수	수령요금 ³⁾
1					
2					

- 1) 연도, 월, 일별로 쓰되, 최초 입실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예시) 2025년 5월 23일
- 2) 성명은 여권에 표기된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기재할 수 있음.
일행이 있는 경우, 대표자 성명 외 인원 수를 기입함.(예시: Rachel McAdams 외 3명)
- 3) 원화를 기준으로 하되, 외국화폐로 받은 경우 화폐명 또는 기호를 표시함. (예시: 20달러 또는 20\$)

【참고 7】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1. 사업 개요

- 상 호 : (한글) (영문)
- 소재지 :
- 사업자 인적사항

성명	유선번호	핸드폰	이메일
(한글)			
(영문)			

2. 시설물 현황(객실, 공용주방, 기타 서비스 공간, 관리시설 등)

구분	사업자 거주 방	객실	화장실	주방	기타 ()	기타 ()
개수	실	실	실	실	실	실

- 운영계획

1. 객실 수 및 요금계획

구분	싱글(1인실)	2인실		트리플 (3인실)	도미토리	한실(온돌)
		더블	트윈			
객실수	실	실	실	실	실	실
요금계획	원	원	원	원	원	원

2. 외국인관광객 서비스 계획

가. 외국어서비스 계획

- 사업자 및 동거가족의 수, 사용가능 외국어 및 구사 수준

성명	관계	구사 외국어	구사수준
	본인		

- 외국어 안내문 및 관광지도 등 비치 계획(□ 안에 √ 표시)

외국어 안내문	☐ 비치	☐ 미비치
외국어 관광지도	☐ 비치	☐ 미비치
기타 자체 홍보물	☐ 비치	☐ 미비치

나. 서비스 제공계획(□ 안에 √표시하고 상세 계획은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	상세 계획
조식서비스(필수)	
한국문화체험 제공	☐ 제공 ☐ 미제공
친목도모프로그램 운영	☐ 운영 ☐ 미운영
관광코스추천안내	☐ 안내 ☐ 미안내
기타()	

다. 위생관리 계획

객실관리	
침구류관리	

3. 홍보계획

☐ 자체 블로그 등 운영	☐ 에어비앤비 등 활용	☐ 서울스테이 활용	☐ 기타 ()
--------------------------------------	-------------------------------------	-----------------------------------	---------------------------------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관련 생활 민원 관리계획

소음·진동	
쓰레기 혼합 배출/무단투기	
기타()	

- 안전관리계획

1. 기초소방설비 구비계획 및 현황

(피난안내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휴대용비상손전등, 안전매뉴얼 등)

스프링 클러	소 화 기	단독형 화재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경보장치	휴대용 비상손전등	피난 안내도	완강기	안전매뉴얼
총 개	총 개	총 개	총 개	총 개	총 개	총 개	총 개	구비/미구비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 설치된 설비의 종류별 총 수량을 기재

2. 향후 보험가입계획

화재보험	☐ 가입	☐ 미가입
영업배상보험	☐ 가입	☐ 미가입
기타()	☐ 가입	☐ 미가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소유자 동의서

업소명		
부동산표기(주소)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 (등록)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입주민 동의서

- ☐ 업소명 :
- ☐ 주 소 :
- ☐ 입주민 동의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등록)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리사무소 동의서

☐ 업소명 :

☐ 주 소 :

공동주택인 _____ (공동주택명)

_____ 동 _____ 호에서 하고자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 영업
활동이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대체 가능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위 임 장

☐ 업소명 :

☐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관 계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관련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5. 1. 3.] [조례 제9487호, 2025. 1. 3.,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주거정비과), 02-2133-7193

제4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